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제공

1. 서설

미국의 특허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WTO/TRIPs 협정체결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정책이 차지하는 위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책결정에 가장 큰 힘을 가지는 대통령의 특허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허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관심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현재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대하다고 판단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연평균 10회 이상 특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보고서에서도 경제발전에 있어서 특허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통해 발명가들이 발명과 혁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신기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특허정책 수립과정 및 각 부처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향후의 미국 특허정책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의 어록에 기초해서 미국의 국가 최고 통치자의 특허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가 향후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상과정에서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지식사회에 적합한 국내 특허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 미국 특허정책의 역사적 고찰, 제3장 미국 특허정책의 결정과정 메카니즘, 제4장 미국의 국내 특허정책, 제5장 미국의 대외 특허정책, 제6장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재산권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미국특허정책의 역사적 고찰

모든 제도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제도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찰은 미국특허정책 연구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특허정책은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망해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활용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보호강화의 측면은 특허만을 취급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창설(1982년)과 동 법원의 특허권자 권리 보호적인 판결에서 볼 수 있고, 활용강화는 연방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바이-돌법(Bayh-Dole Act, 1980년)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지식재산권의 국제표준화 정책으로서 1988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쌍무협상과 WTO들의 다자간 협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의 특허정책은 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력히 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라는 국내정책과 정비된 지식재산

권 제도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대외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1980년대초부터 강력한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실행하였다. 1980년대 미국을 친특허 시대로 이끈 중요한 사항은 1982년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 반독점법의 약화,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연계,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특허대상의 확대, 미국특허청의 위상강화 등 6 가지로 들 수 있다.

〈표 1〉 1980년 초 이후 미국의 특허정책

국내정책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 (기술정책) 1. 보호강화 : 특허대상 확대, 특허전담법원(CAFC)설립 2. 활용강화 : 공공기술의 민간활용 장려 (바이-돌법)
대외정책	정비된 지식재산권 제도의 세계적 확산 (무역정책) 보호강화/쌍무협상 및 다자간협상(WTO)

90년대에도 미국의 국내외 특허정책은 1980년대 초반의 보호강화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발명자 및 신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조약 및 쌍무협상, 3국(미국, 일본, 유럽) 특허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0년대 대외 특허정책은 WTO/TRIPs 협정의 체결과 그 이행을 통한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즉 80년대 쌍무협상을 통한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강화라는 무게중심이, 다자간협상으로 옮겨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스페셜 301조를 활용한 양자협상을 통한 강화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NAFTA협정의 협상 과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상표법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럽 및 일본 특허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3개국 특허청은 특허심사 등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심사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세계특허부여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3국 특허청은 인터넷 기반의 출원제도 통일화,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 3국 네트워크의 WIPO로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2000년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심사기준을 서로 비교하고 공통점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한편, 1990년대 미국의 국내특허정책은 80년대의 연방기술의 실용화 정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신기술에 대한 보호정책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른 이들 분야의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를 특허법내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국가 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¹⁾를 설립하여 특허상표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주요한 사건으로는 “1999년 미국 발명가 보호법”에 의한 발명자 권한의 강화와 미국특허법의 국제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3. 미국 특허정책의 결정과정 메카니즘

미국의 경우 특허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미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

1) H.R. 2490 (P.L. 106-58), “2000년 회계연도 재무 및 일반 정부 세출안법”은 1999년 9월 29일에 법률로 서명되었다. 이 법의 제653조에 의하여 연방 및 외국 정부사이에 국내 및 국제적 IP 법률 집행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지재권법집행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PTO 청장과 법무부의 형사국 법무차관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는다. 다른 위원들은 미 무역대표부, 미 관세청, 국무부, 그리고 상무부의 대표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저작권 관련에 대해서 저작권청과 협의하고, 연례적으로 대통령, 의회 세출위원회 및 법무부에 연례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내의 각 부문의 종합적 참여에 의한 정책수립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주요한 특허정책 쟁점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관련 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에 의해 주요한 미국의 특허정책의 변혁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특허정책을 그 상위 목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서 특허상표청의 목표를 상무부의 목표와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범부처적인 조정과 협력의 시스템 구축이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PTO와 다른 연방 기관들은 지재산권 관련 문제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의회에 이에 호응하여 적절한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정책이 다른 주요정책, 경제, 기술 통상 정책 등과 고립되지 않고 합목적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 대통령 중 클린턴 대통령의 특허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 어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클린턴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통해 발명가들이 발명과 혁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신기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됨을 인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을 성과중심기관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이 미국의 고용과 신기술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설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의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이 인구가 최대로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5개의 특허강국에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특허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

식을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하원 법사위원회하의 법원 및 지재산 소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 19일에는 “유전자 특허와 다른 게놈 발명”에 관한 청문회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법원 및 지재산 소위원회에서 열렸으며, 미국 특허상표청장 및 생명공학관련 산업계 및 관련 학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미국 특허청장은 유전자 특허정책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고, 제노텍 등 생명공학회사와 펜실베니아대학교수 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청문회가 특허청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허청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청문회를 통해서 의회의 의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특허정책이 효과적으로 의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 의회 의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소양을 넓히고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1월 12일 상원 세출위원회의 노동, 건강, 인력서비스, 교육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에서 특허청장은 미국의 특허제도, 출기세포의 특허성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의회는 국내 과학기술혁신에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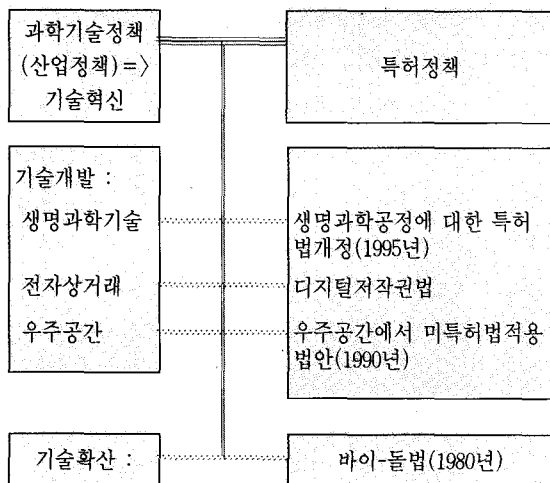
4. 미국의 국내 특허정책

특허제도의 목적이 기술개발자에게 독점권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공개 내지는 라이선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유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특허정책과 과학기술 내지 산업정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상 미국의 국내 특허정책은 이러한 과학기술(산업)정책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유용한 정책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기술개발정책은 생명공학과 인터넷 분야에서 특허대상의 확대와 보호강화라는 특허정책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확산정책은 1980년 바이-돌법으로 상징되는 공공기술에 대한 특허권소유 허용정책에 대응된다고 하겠다.

〈그림 1〉 기술정책과 특허정책의 연계



이와같이 기술혁신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특허정책은 신기술에 대한 보호와 개발된 과학기술의 실용화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특허상표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분과 실무반이 구성되어 법개정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실무반에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술정책과 지식재산권 정책의 연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에 입법화된 바이-돌법은 “1980년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수정법”으로서 연방기관이 자금지원

하여 이루어진 발명이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첫 번째로, 대학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 민간 기업체에게 독점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80년 당시 연방기관이 보유한 전체특허 28,000개 중에서 라이선스가 이루어진 것은 5% 미만인데 비해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도록 한 경우에는 적은 규모이지만 25% 내지 30%가 라이선싱이 이루어졌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입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바이-돌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업이 전용실시권이라는 독점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술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바이-돌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자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제정되게 되었고, 1999년 5월에는 국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부여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상용화법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독점권을 일정한 제한 요건 없이 준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연구중심대학들이 바이-돌법의 각종 규정을 실제로 적용, 운영되는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GAO가 현장방문 시 면담한 연방기관 및 대학의 관계자들은 바이-돌법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의회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대학과 연구자들은 동 법으로 인해 정부가 발명을 소유할 때보다 기술이전이 활발하여 이루어짐과 동시에 발명으로 인한 수입의 증대를 보고하고 있다.

1996년 회계연도에 대학이 공개한 발명의 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라이선싱 수입은 총 3억

6천5백이십만불로 221%증가함을 나타냈다. 이는 바 이-돌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1996년 회계연도 응답 대학들의 라이선싱 수입중 802%가 생명과학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분야가 기초학문이면서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미국의 대외 특허정책

1970년대에 OPEC의 오일쇼크를 겪고 신흥산업국(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세계 무역 및 경제 제도는 많이 약화되었고 이는 미국내에서 보호주의의 감정을 재발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가 바로 1974년 무역법이었다.

그리고 신흥산업국들의 성장은 미국 기술에 대한 무임승차의 결과로 인한 것이 의견이 미국내 산업계 내에서 팽배해지면서 미국 기술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 지재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내 산업계는 의회와 행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대내적으로는 의회는 1984년 무역법을 통과시켜서 일반관세특혜제도(GSP)와 301조에 지재권 보호 요소를 첨부시켰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집행 구속력이 약한 기존의 지재권 체계로부터 등을 돌려 1986년에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 지재권 보호를 의제로 올리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미국은 WTO 출범이후 지재권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1988년 무역법에서 스페셜 301조 지재권 보호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등 쌍무협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분쟁해결 절

차도 복잡한 다자간무역협상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쌍무협상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즉각적으로 EC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EC는 1995년에 WTO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 미국 무역법 301조가 WTO/TRIPs의 DSU 규정에 위배됨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지만 WTO 패널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의 적용은 이론적으로는 WTO 위배에 이를 수도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WTO 규정에 합치하는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판결하였다. 미국이 패널에서 각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301조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WTO 규칙과 절차에 맞게 재량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WTO 판결에 힘입은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301조와 관련법을 사용하여 쌍무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쌍무협상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다자간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1930년 관세법 337조의 개정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 있다. 1989년 GATT 패널의 판결 이후에 337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337조와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의 개정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 지재권 문제를 상정시키는데 성공한 이후로 소원해진 WIPO에서의 활동은 WTO/TRIPs, NAFTA와 같은 무역관련 다자간 협상이 일단락되고, 세계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제4장 제4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지재권 법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WIPO를 통해서 지식재

산권의 통일화를 위한 국제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6.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재산권 정책

경제학자 솔로(Robert Solow)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경제발전의 약 80%는 고전적인 생산 요소인 자본이나 노동의 증가로 설명될 수 없는 기술 혁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성장 이론의 주창자인 루카스 등은 기술 혁신의 근본 요소는 '지식'이며, 지식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지식 산업에서는 필연적으로 독점 이윤이 필요하며, 지식 창출의 필요 조건으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을 명확하고 유효하며 집행 가능한 지식재산권 체계라고 정리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미국에 의하여 주도된다면 과학기술 지식을 대변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21세기의 산업재산권 정책의 방향은 발명자와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 기술선진국과 기술후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에 걸맞은 균형점을 찾는 것을 쉽지 않은 작업이고 정책담당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산업재산권 정책은 산업재산권제도의 "세계적 통일화"와 "보호가 강화"라는 20세기 후반부터 계속되어온 방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산업재산권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독점금지법 등 경쟁법의 운영, 강화된 NGO의 활동을 배경으로 한 기술독점에 대한 비판 및 기술의 윤리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현재, 생명공학특허 및 인터넷 및 정보 기술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복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문제, 특허정보의 활용 등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정책 담당자의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 범부처적인 특허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지적재산전략 위원회" 설립
- 특허청의 역량 및 특허통계 분석 기능의 강화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의 강화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위 정책 담당자의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특허제도를 경제성장을 위한 지식창출의 인프라로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1970년대 미국기업의 특허건수가 감소하는 통계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시하였고, 그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0년에 대학발명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1980년의 특허법 개정(1980년 바이-돌법)이 이루어졌다. 동 법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가 활발해 지게 되었고, 미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 등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일년에 10번 이상 특허정책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미국 의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정책 수행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특허제도를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청장은 생명공학 특허정책 등 중요한 특허정책을 의회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허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 범부처적인 특허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위원회” 신설

특허정책을 산업정책, 무역정책, 기술정책과 연관성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국제 무역, 정치, 행정,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미국의 전자상거래 정책을 보면 법무부 차원에서 큰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허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조율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특허정책을 국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특허청을 중심으로 특허 정책 수립을 다른 유관 부처와 전략적으로 형성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책이 환류(feedback)되도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의 특허청장과 법무부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지식재산전략위원회”는 특허정책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관련 부처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민간 전문가와 관련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전략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

허청장이 적절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업무추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그 팀장은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의 관련 국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는 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정부 조직상 위치와 업무추진팀 구성시 참여 전문가 등을 예시한 것이다.

(3) 특허청의 역량 및 특허통계 분석 기능의 강화

한국 특허청이 질 높은 특허를 신속하게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책판단의 기초자료인 특허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특허 통계를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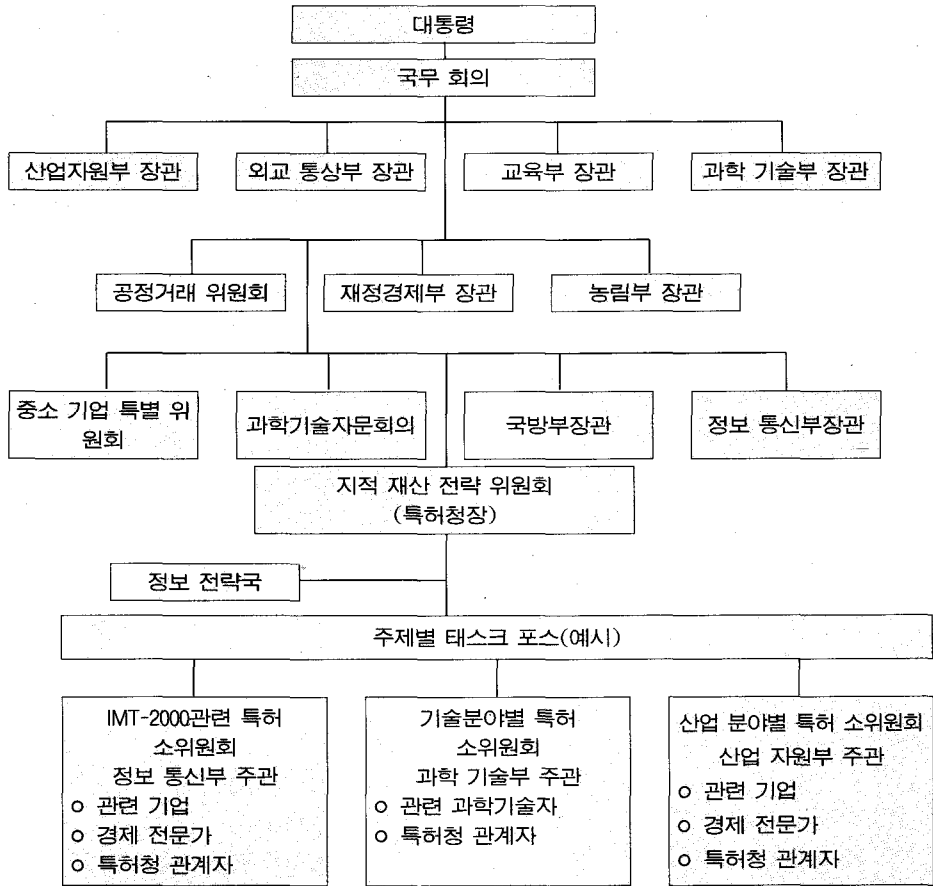
가. 특허청의 역량 강화

특허청이 질 높은 특허심사를 통해 양질의 특허를 가능한 빨리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기능을 실현시키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과 급속히 증가하는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과 적정수의 인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9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을 정부조직법의 정원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구매계약시 정부조달법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나. 정책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 정보 및 통계 분석의 강화

지금까지 특허 정보는 경제 인프라로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특허 중시 정책이 가시화(可視化)되면서 특허 정보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경제 성장 정책을 위한 전략 정보가 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71년 특허상표청내에 기술평가예측팀을 설치하여 특허

〈그림 2〉 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조직도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국내의 경우, 특허청 내 정보자료국에서 특허 정보의 관리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거의 국내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 정보의 생성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 특허청은 미국을 위시한 일본, 유럽, 중국 등 우리의 경쟁 국가가 생성하는 특허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수집된 자료로부터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정보자료국을 정보전략국(가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정보 전략국내 정보통계분석 담당 관실(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신설되는 정보통계분

석담당관실은 글로벌 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주된 업무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분석된 정보를 특허청 내·외의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에게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특허정보통계분석과 전문가의 육성, 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신설과 같은 이러한 정책 제언은 양질의 심사와 KIPONET시스템의 안정된 운영, 그리고 현재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식경영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과의 적절한 조화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임에 정책 담당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